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규정

개정 2008.12.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에 관한 교육, 연구개발, 기술지원, 컨소시엄, 창업 및 산업화지원 구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방의료기기 개발 관련 교육·훈련 및 기술보급
2. 한방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현장애로과제 중심의 응용연구
3.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 관련 기술지원 및 컨설팅
4. 한방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산학관 협동
5. 한방의료기기 산업관련 자료의 수집, 보급, 전시를 위한 사업
6. 한방의료기기 사업관련 수익사업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소재) 센터 및 그 부속기구는 상지대학교 또는 그 인근의 관련 산업현장에 둔다.

제2장 기구 및 조직

제4조(기구) 센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개발분석실
2. 교육실
3. 표준화실
4. 연구지원실
5. 지역협력실
6. 컨설팅실

제5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두고, 각 기구의 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각 기구의 부장은 해당 기구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센터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⑥ 센터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교육·연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6조(연구원) 이 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 객원위원, 책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위원은 이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

2. 객원위원은 센터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 대학 교원 또는 기타 관련기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3. 책임연구원은 연구개발 및 교육 업무를 위하여 상근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4. 보조연구원은 고등학교졸업 이상 소지자로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심사 및 자문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내 전임교원 및 한방의료기기 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교외 인사(이하 '외부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되, 내부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센터장, 센터 산하 각 기구의 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구와 운영체계 및 사업계획
2. 주요 사업과제의 선정 및 조정
3. 연구원의 추천 동의
4. 예산 및 결산
5.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6.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외부운영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운영위원장은 심의 한 사항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센터의 각 종 세부사업 및 역동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심사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임대실 창업 및 연구소 입주 자격심사
2. 연구장비 및 기타장비 구입 및 기증이나 임차에 따른 승인심사
3. 정책 및 연구과제 수주에 관한 자문
4. 국제교류와 관계된 업무
5. 기타 양·한방 복합의료기기 산업 분야와 관계된 업무

제4장 회계

제10조 (수입)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1. 센터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용역 수익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및 지원금
3. 대학의 지원금
4. 센터 임대실의 창업 및 연구소 임대료 및 관리비
5. 기부금 등 기타 수익

제11조 (예산과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 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 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임대수익의 10%를 산학협력단에 전입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센터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기타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